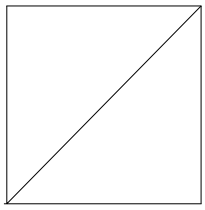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007 - 5 호
의 결 연 월 일	2007. 8. 20. (제 3 차 회의)

보고안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차 례>

Ⅰ. 양형자료분석관 충원 및 교육 실시 ····· 1

Ⅱ. 양형자료분석관 업무전산화 완료 ····· 4

Ⅲ. 모의 양형자료분석 ····· 7

Ⅳ. 양형위원회 관련 폐쇄커뮤니티 개설 ····· 29

Ⅴ. 전문위원 연구업무 지원 ····· 30

별첨 자료집 1.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자료

2.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 사용설명서

3. 분석관 입력화면 모음

Ⅰ. 양형자료분석관 충원 및 교육 실시

1. 양형자료분석관 충원

○ 2007. 7. 11. 양형자료분석관 11명이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자료조사과로 전보되었음

○ 명단 및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근무지	5급	6·7급
운영지원단		송 종 근
서울고등법원	최 병 일	
서울중앙지법	차 주 민	안 균 석
서울남부지법		이 진 호
인천지법		서 광 현
수원지법		고 성 수
대전지법	박 영 국	
대구지법	정 호 길	
부산지법	박 장 배	
광주지법	정 진 안	
합계	6명	5명

2. 분석관 교육 실시

가. 교육 목표

○ 양형자료분석관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함

○ 교육과 함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함으로써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능력 증진

나. 교육기간 및 장소

○ 2007. 7. 23.(월) ~ 7. 25.(수) 3일간

○ 법원공무원교육원(경기도 일산시 소재)

다. 교육대상

○ 각급 법원 양형자료분석관 전원(10명)

○ 운영지원단 자료조사과 및 통계분석과 분석관 및 직원(6명)

라. 교육내용

○ 양형위원회 현황과 향후 계획(단장)

- 양형위원회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향후 계획을 소개

○ 형사실체법 실무(사법연수원 이창형 교수)

- 양형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지식으로서 형법 총론 중 필요 부분

○ 형사소송절차 실무(법원공무원교육원 전동여 교수)

- 법원의 관할, 각종 기간, 증거, 공소장 기재사항, 유죄판결에 명시할 사항 등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양형자료분석관 업무수행 관련 부분

○ 양형실무 및 양형자료조사업무(단장)

- 양형의 의의와 목표, 양형조건, 양형인자의 확인과 평가 등 양형 실무의 이론
- 양형자료분석관이 수행할 양형자료조사 업무 전반 및 양형자료분석관 업무 전산시스템 소개

○ 양형조사표 작성(자료조사과장)

- 실제 기록검토를 통한 양형조사표 작성 후 질의응답

○ 교양강좌

강좌내용	강사	강사직업	비고
건강의 원리	염정숙	단전호흡 사범	건강에 관한 강의 및 단전호흡 체험

※ 강의안은 별첨 자료집 참조

마. 교육일정

일자	시간	내용	강사
7. 23.	09:30-09:50	개강식 및 친교, 기념사진촬영	
	10:00-11:30	양형위원회 현황과 향후계획	단장
	12:00-13:30	운영지원단 오찬	국화식당
	14:00-15:50	형사실체법 실무	사법연수원 이창형 교수
	16:00-17:50	건강의 원리	염정숙 단전호흡 사범
7. 24.	10:00-11:50	형사소송절차 실무	교육원 전동여 교수
	12:00-13:50	중식	
	14:00-16:50	양형실무 및 양형자료조사업무	단장
	17:00-18:00	체육행사(축구)	
	18:30-20:30	상임위원 주최 만찬	국화식당
7. 25.	09:40-11:30	양형조사표 작성	자료조사과장
	11:30-13:00	중식	
	13:00-14:00	자유토론	

바. 교육결과

○ 양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분석관의 고유업무인 양형자료조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각급 법원에 근무하는 분석관들이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에 대한 소속

감을 갖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교육과정을 동영상(13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대법원 코트넷에 홍보자료로 게시하였음

Ⅱ. 양형자료분석관 업무전산화 완료

1. 개발과정

○ 개발 기간

- 2007. 6. 18. ~ 2007. 8. 3.
- 2007. 8. 6. 시험가동 후 8. 7. 본격 가동

○ 시스템 개발 범위

- 1심 법원 분석관의 양형자료입력
- 판결선고 재판부의 확인
- 운영지원단의 분석관 업무관리 및 입력자료 관리

2. 대상범죄

○ 살인범죄 : 살인, 상해치사, 자살교사 등 142개 죄명

○ 성폭력범죄 : 강간 등 73개 죄명

○ 강도범죄 : 강도 등 86개 죄명

○ 뇌물범죄 : 뇌물수수 등 22개 죄명

○ 절도범죄 : 절도 등 88개 죄명

○ 횡령범죄 : 횡령 등 23개 죄명

○ 배임범죄 : 배임 등 33개 죄명

○ 마약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18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 관련 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사고후미조치) 등

○ 기타 경합범죄 : (빈도수 순으로) 사기, 폭처법위반(공동상해), 상해, 사

문서위조·변조 등 42개 죄명

※ 현재는 범죄유형별로 양형인자 입력 화면이 동일

3. 양형인자

가. 공통양형인자

○ 인구통계학적 요소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혼인관계, 부양가족 유무 및 수

○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 주거, 월수입, 건강상태, 심신장애

○ 절차적 요소

- 피고인의 신병, 상소 여부, 자수, 자백 여부
- 공범관계
- 반성의 정도
- 경합범 유무
- 사선변호인 선임 여부

○ 범죄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가석방기간 중, 형집행정지 기간 중
- 제37조 후단 전과
- 초범 여부
- 누범 전과
- 동종전과의 내용
  - ▷ 징역형 또는 금고형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 선고유예, 소년보호처분, 보호감호, 치료감호 횟수
  - ▷ 재범기간
  - ▷ 동종전과의 특이사항(서술)
- 이종전과의 내용

나. 개별 양형인자

○ 제2차 회의 자료집 79쪽 이하 전산양식 참조

4. 업무프로세스

○ 대표죄명 등록

- 소속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죄명 사건 목록이 자동생성됨
- 분석관이 조사사건 후보로 관심사건을 등록

○ 판결선고 후 판결문 등록

- 판결선고 후 재판부가 판결문을 판결문관리시스템에 등록
- 판결문 등록 이후 양형정보시스템에서 판결문을 자동분석 ⇒ 판결문 분석으로 생성 가능한 양형인자 자동 체크

○ 분석관의 양형자료 조사 및 입력

- 자동생성된 양형인자의 오류 여부를 점검하고 양형자료를 추가 입력

○ 양형조사표의 재판부 전산 송부 및 재판부 확인

- 입력이 종료된 양형조사표를 재판부에 전산으로 송부
- 재판부는 양형조사표를 확인한 후 수정 및 추가 입력
- 재판부 송부와 동시에 운영지원단에 자동 송부되고, 재판부 확인 후 수정된 양형조사표 역시 운영지원단에 자동 송부

○ 분석관이 작성한 양형조사표와 재판부가 입력한 양형조사표 비교

5. 향후 계획

가. 분석관 업무시스템 자체 개선

○ 2007년 9월 이후

○ 시스템 개발 범위

- 항소심 법원 분석관의 양형자료입력
- 항소심에서 추가·변경된 양형자료 확인 입력
- 죄명별 양형인자 입력 화면의 세분화
- 양형인자의 추가 및 세분화
- 대상범죄의 확대

나. 과거 및 현재 양형실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 시스템 연계

○ 전문위원의 연구계획에 따라 과거 및 현재 양형실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입력방식 및 조사대상 양형인자를 보완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별지 분석관 업무시스템 사용설명서 및 화면 모음 참조

Ⅲ. 모의 양형자료분석

1. 개요

가. 목적

○ 양형실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한 운영지원단의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보충할 필요

나. 모의분석 설계

(1) 분석대상의 선정

○ 양형정보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죄명이 살인(단순살인)인 1심 사건 100건을 추출

○ 양형정보시스템의 통계그래프 상 형량 분포가 많은 것(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 5년, 7년, 8년, 10년, 12년, 15년, 무기)을 기준으로 10건 내외를 임의로 안분하였고, 사형이 선고된 사건 1건을 추가하였음

○ 재판부별 분류, 판결선고일 분류는 하지 않았음

(2) 양형자료

○ 양형정보시스템에 축적된 판결문만을 조사하였음

○ 살인 이외에 다른 죄가 경합된 경우에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 양형인자

○ 법원에서 종래 사용해 왔던 양형조사표 상의 양형인자를 기초로 조사하였음

피고인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이상
피고인 지능	1. 높음, 2. 보통, 3. 낮음
혼인관계	1. 미혼, 2. 기혼, 3. 동거, 4. 별거, 5. 이혼, 6. 기타
부양가족	1. 없음, 2. 배우자, 3. 자녀, 4. 부모, 5. 조부모, 6. 기타
가정생활	1. 성실 2, 불성실
범행의 계획성	1. 우발적, 2. 계획적
고의	1. 미필적 고의, 2. 확정적 고의
범행동기	1. 가정불화 (1-1. 치정관계 1-2 생활궁핍/폭행 1-3 정신질환 1-4 기타) 2. 언행격분, 3. 금전관계, 4. 원한관계, 5. 정신질환, 6. 싸움, 7. 범죄은폐목적, 8. 종교관계, 9. 기타
범행방법	1. 흉기사용, 2. 익사, 추락사, 3. 교살(질식사), 4. 총포류사용 5. 독극물사용, 6. 폭발물 사용, 7. 자동차등 사용, 8. 기타
가해부위	1. 기타, 2. 머리, 얼굴, 목
가해횟수 및 시간	1. 1회/일순간, 2. 수회/일정시간, 3. 수십회
피해자 수	1. 1명, 2. 2명, 3. 3명 이상
피해자 연령	1. 영아, 2. 10대, 3. 20대, 4. 3, 40대, 5. 5,60대, 6. 70대 이상
피해자 관계	1. 가족(전배우자포함), 2. 친족, 3. 친구, 4. 애인, 5. 잘 아는 사람, 6. 약간 아는 사람, 7. 직장동료, 8. 업무관계인, 9. 기타
피해자 유발	1. 유발, 2. 유발 없음
자수	1. 자수, 2. 검거

자백	1. 자백, 2. 일부부인, 3. 부인
범행 후 반성	1. 깊이 반성, 2. 보통, 3. 개전의 정 없음
피해회복	1. 합의, 2. 공탁등 일부합의, 3. 미합의
피해자측 처벌의사	1. 선처탄원, 2. 처벌불원, 3. 처벌원함, 4. 강력처벌
범행시 음주	1. 만취, 2. 주취, 3. 비음주
전과	1. 전과없음, 2. 이종전과, 3. 동종전과
선고시 피고인건강	1. 심신상실, 2. 심신미약, 3. 지병, 4. 심리적 불안상태, 5. 정상, 6. 기타

○ 양형인자의 내용은 판결문의 양형이유 등에 적시된 경우(예컨대, 피고인은 … ‘계획적으로’ …, ‘깊이 반성하고 있고’… 등)에는 그에 따랐고,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자가 판단하였음

○ 판단의 기준

- 범행의 계획성 : 범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경우 등에는 계획성 여부가 명백하지만, 예를 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돌아왔으나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할 마음을 먹고 식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경우와 같이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 현장에 없는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현장에 간 상황’을 계획적인 것으로 분류하였음
- 범행동기 : 가정불화,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금전관계(채무면탈,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격분한 경우 등), 원한관계, 정신질환, 말다툼 이외의 싸움 끝에 범행에 이른 경우, 다른 범죄은폐목적, 종교관계, 기타로 분류하였고, 비교적 빈도수가 많은 가정불화는 치정관계, 생활궁핍이나 반복되는 폭행, 정신질환, 기타 가정불화(동반자살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등)로 다시 세분하였음
- 가해부위 : 보다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오는 가해부위로 볼 수 있는 머리·얼굴·목 부위와 가슴·팔다리·배·기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나, 머리·얼

굴·목 부위를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는 빈도수가 적어 합산하여 기타 신체부위로 표시하였음(머리·얼굴·목 부위를 타격한 것은 흉기를 사용한 경우와 교살의 경우로 한정하였음)

- 피해자와의 관계 : 가족, 친족, 친구, 애인, 잘 아는 사람, 약간 아는 사람, 직장동료, 업무관계인,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일단 가족, 친족, 친구, 직장동료, 애인, 업무관계인에 속하는 경우를 먼저 조사하고, 그 외의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 약간 아는 사람, 기타 모르는 사람 등으로 분류하였음
  - ▷ 전 배우자는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켰음
  - ▷ 잘 아는 사람, 약간 아는 사람의 판단 기준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표본조사에서는 객관적인 피고인-피해자 관계를 기준으로 하였음
  - ▷ 애인과 친구의 구별 기준은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피고인·피해자 관련자들이 그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여부에 따랐음

○ 피고인의 특징에 해당하는 사항 중 성장과정, 직장생활 경력 및 태도, 혼인관계, 부양가족, 가정생활 등도 조사하였으나, 판결문을 통해 확인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자수, 자백 여부도 유의미한 빈도수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전과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보호처분, 기타, 집행유예기간 중, 가석방기간 중, 보석기간 중, 형집행정지 중, 누범, 제37조 후단 전과 등으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유의미한 빈도수가 나오지 않아 분석에서는 초범, 이종전과, 동종전과로 단순화시켰음

- 동종전과의 기준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살인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살인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되었고, 살인이 '피고인의 폭력성'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력성이 발현되는 범죄유형(예컨대, 상해, 폭처법위반, 성폭력범죄 등)은 동종전과로 분류하였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본래 양형조사표에 포함되었던 양형인자는 아니었

으나, 이를 판결문의 양형이유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음

- 기준시점은 범행 당시부터 형 선고 시까지의 건강상태를 포함하고 있음

(4) 분석도구

○ SPSS를 사용하였음

다. 조사결과

○ 별지와 같음

2. 분석

가. 빈도분석

(1) 법원별 빈도

법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서울중앙	18	18.0	18.0
서울동부	9	9.0	9.0
서울남부	14	14.0	14.0
서울북부	7	7.0	7.0
서울서부	3	3.0	3.0
의정부	5	5.0	5.0
인천	7	7.0	7.0
수원	13	13.0	13.0
춘천	6	6.0	6.0
대전	4	4.0	4.0
청주	1	1.0	1.0
부산	4	4.0	4.0
울산	1	1.0	1.0
창원	2	2.0	2.0

법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합계	100	100.0	100.0

나. 형량

형량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집행유예	7	7.0	7.0
36개월	13	13.0	13.0
60개월	10	10.0	10.0
84개월	10	10.0	10.0
96개월	10	10.0	10.0
120개월	10	10.0	10.0
144개월	10	10.0	10.0
180개월	10	10.0	10.0
240개월	5	5.0	5.0
무기징역	14	14.0	14.0
사형	1	1.0	1.0
합계	100	100.0	100.0

다. 법원별 형량분포

법원	형량			
	집행유예	자유형	무기징역	사형
서울중앙	0	17(125.6)	1	0
서울동부	0	8(126.0)	1	0
서울남부	0	14(129.4)	0	0
서울북부	0	6(158.0)	1	0
서울서부	0	2(84.0)	1	0
의정부	1	3(84.0)	1	0

법원	형량			
	집행유예	자유형	무기징역	사형
인천	0	7(120.0)	0	0
수원	0	9(73.3)	4	0
춘천	0	4(48.0)	2	0
대전	2	1(36.0)	0	1
청주	0	1(36.0)	0	0
대구	2	4(87.0)	0	0
부산	1	1(36.0)	2	0
울산	0	0(0.0)	1	0
창원	1	1(36.0)	0	0
합계	7	78(8508)	14	1
평균 형량		109월(≒9년)		

법원별 평균형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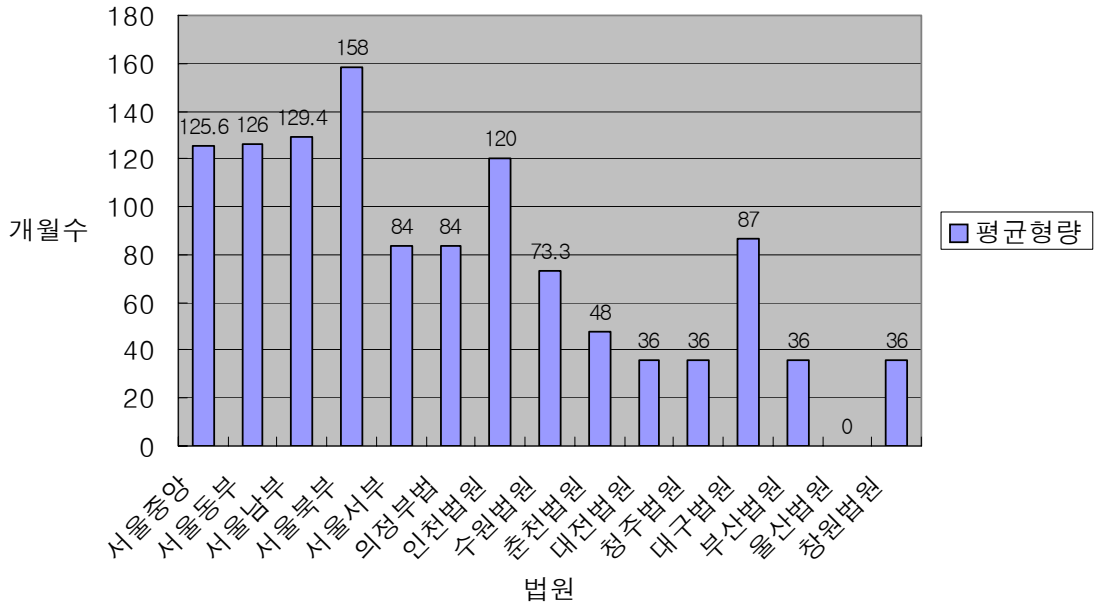

(1) 범행의 계획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우발적	79	79.0	79.0
계획적	21	21.0	21.0
합계	100	100.0	100.0

(2) 고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필적고의	4	4.0	4.0
확정적고의	96	96.0	96.0
합계	100	100.0	100.0

(3) 범행동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정불화	63	63	63
언행격분	16	16	16
금전관계	2	2	2
원한관계	4	4	4
정신질환	2	2	2
싸움	9	9	9
기타	4	4	4
합계	100	100	100

(4) 가해부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타부분	40	40.0	40.4
머리/얼굴/목	59	59.0	59.6
합계	99	99.0	100.0

(5) 가해횟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회/일순간	37	37.0	37.0
수회/일정시간 경과	42	42.0	42.0
수 십 회	21	21.0	21.0
합계	100	100.0	100.0

(6) 피고인 연령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8	8.0	8.0
30대	30	30.0	30.0
40대	37	37.0	37.0
50대	11	11.0	11.0
60대	10	10.0	10.0
70대 이상	4	4.0	4.0
합계	100	100.0	100.0

(7) 피고인 반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깊이반성	66	66.0	77.6
보통	6	6.0	7.1
개전의 정 없음	13	13.0	15.3
합계	85	85.0	100.0

(8) 피해자 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명	87	87.0	87.0
2명	9	9.0	9.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명이상	4	4.0	4.0
합계	100	100.0	100.0

(9) 피해자 관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족	51	51	51
친족	3	3	3
친구	7	7	7
애인	12	12	12
잘아는사람	11	11	11
약간아는사람	1	1	1
직장동료	3	3	3
업무관계인	1	1	1
기타	11	11	11
합계	100	100	100

(10) 피해자 유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피해자유발	27	27.0	27.0
피해자유발 무	73	73.0	73.0
합계	100	100.0	100.0

(11) 피해자측 처벌의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선처탄원	21	21.0	55.3
처벌불원	5	5.0	13.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강력처벌	12	12.0	31.6
합계	38	38.0	100.0

(12) 피고인 음주관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만취	6	6.0	6.1
주취	35	35.0	35.7
비음주	57	57.0	58.2
합계	98	98.0	100.0

(13) 피고인 전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과없음	51	51.0	75.0
이종전과	11	11.0	16.2
동종전과	6	6.0	8.8
합계	68	68.0	100.0

(14) 피고인 건강상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심신미약	17	17.0	33.3
지병	12	12.0	23.5
극도심리불안	12	12.0	23.5
정상	10	10.0	19.6
합계	51	51.0	100.0

3. 양형인자별 교차분석

			형량(개월)											합계	χ^2
			집유	36.00	60.00	84.00	96.00	120.00	144.00	180.00	240.00	무기	사형		
범행동기	가정불화	빈도	6	11	9	5	6	7	7	6	1	5	0	63	0.000***
		비율(%)	9.5	17.5	14.3	7.9	9.5	11.1	11.1	9.5	1.6	7.9	0.0	100.0	
	언행격분	빈도	1	0	1	2	1	3	1	2	2	3	0	16	
		비율(%)	6.3	0.0	6.3	12.5	6.3	18.8	6.3	12.5	12.5	18.8	0.0	100.0	
	금전관계	빈도	0	0	0	0	2	0	0	0	0	0	0	2	
		비율(%)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원한관계	빈도	0	0	0	0	0	0	1	0	0	3	0	4	
		비율(%)	0.0	0.0	0.0	0.0	0.0	0.0	25.0	0.0	0.0	75.0	0.0	100.0	
	정신질환	빈도	0	1	0	0	0	0	0	1	0	0	0	2	
		비율(%)	0.0	50.0	0.0	0.0	0.0	0.0	0.0	50.0	0.0	0.0	0.0	100.0	
	싸움	빈도	0	1	0	3	1	0	1	1	2	0	0	9	
		비율(%)	0.0	11.1	0.0	33.3	11.1	0.0	11.1	11.1	22.2	0.0	0.0	100.0	
	기타	빈도	0	0	0	0	0	0	0	0	0	3	1	4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75.0	25.0	100.0	
합계		빈도	7	13	10	10	10	10	10	10	5	14	1	100	
		비율(%)	7.0	13.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4.0	1.0	100.0	
범행방법	흉기사용	빈도	3	6	4	8	9	7	7	9	5	13	1	72	0.445
		비율(%)	4.2	8.3	5.6	11.1	12.5	9.7	9.7	12.5	6.9	18.1	1.4	100.0	
	익사/추락사	빈도	0	1	0	0	0	0	0	0	0	0	0	1	
		비율(%)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교살(질식사)	빈도	3	5	5	1	1	3	3	1	0	1	0	23	
		비율(%)	13.0	21.7	21.7	4.3	4.3	13.0	13.0	4.3	0.0	4.3	0.0	100.0	
	총포류사용	빈도	0	0	0	1	0	0	0	0	0	0	0	1	
		비율(%)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독극물사용	빈도	1	1	1	0	0	0	0	0	0	0	0	3	
		비율(%)	33.3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합계		빈도	7	13	10	10	10	10	10	10	5	14	1	100	
		비율(%)	7.0	13.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4.0	1.0	100.0	
범행계획성여부	우발적	빈도	6	12	8	9	10	10	10	5	3	6	0	79	0.001**
		비율(%)	7.6	15.2	10.1	11.4	12.7	12.7	12.7	6.3	3.8	7.6	0.0	100.0	
	계획적	빈도	1	1	2	1	0	0	0	5	2	8	1	21	
		비율(%)	4.8	4.8	9.5	4.8	0.0	0.0	0.0	23.8	9.5	38.1	4.8	100.0	
합계		빈도	7	13	10	10	10	10	10	10	5	14	1	100	
		비율(%)	7.0	13.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4.0	1.0	100.0	
고의여부	미필적	빈도	0	1	1	1	0	1	0	0	0	0	0	4	0.844
		비율(%)	0.0	25.0	25.0	25.0	0.0	25.0	0.0	0.0	0.0	0.0	0.0	100.0	
	확정적	빈도	7	12	9	9	10	9	10	10	5	14	1	96	
		비율(%)	7.3	12.5	9.4	9.4	10.4	9.4	10.4	10.4	5.2	14.6	1.0	100.0	
합계		빈도	7	13	10	10	10	10	10	10	5	14	1	100	
		비율()	7.0	13.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4.0	1.0	100.0	

			형량(개월)											합계	χ^2
			집유	36.00	60.00	84.00	96.00	120.00	144.00	180.00	240.00	무기	사형		
피해자 유발	피해자 유발	빈도	4	7	5	3	4	1	2	0	1	0	0	27	0.012*
		비율(%)	14.8	25.9	18.5	11.1	14.8	3.7	7.4	0.0	3.7	0.0	0.0	100.0	
	피해자 유발무	빈도	3	6	5	7	6	9	8	10	4	14	1	73	
		비율(%)	4.1	8.2	6.8	9.6	8.2	12.3	11.0	13.7	5.5	19.2	1.4	100.0	
합계		빈도	7	13	10	10	10	10	10	10	5	14	1	100	
		비율(%)	7.0	13.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4.0	1.0	100.0	
가해 부위	기타 부분	빈도	2	4	4	6	7	2	4	3	1	7	0	40	0.428
		비율(%)	5.0	10.0	10.0	15.0	17.5	5.0	10.0	7.5	2.5	17.5	0.0	100.0	
	머리등	빈도	5	8	6	4	3	8	6	7	4	7	1	59	
		비율(%)	8.5	13.6	10.2	6.8	5.1	13.6	10.2	11.9	6.8	11.9	1.7	100.0	
합계		빈도	7	12	10	10	10	10	10	10	5	14	1	99	
		비율(%)	7.1	12.1	10.1	10.1	10.1	10.1	10.1	10.1	5.1	14.1	1.0	100.0	
가해 횟수	1회/ 일순간	빈도	2	4	6	7	6	3	6	2	0	1	0	37	0.009**
		비율(%)	5.4	10.8	16.2	18.9	16.2	8.1	16.2	5.4	0.0	2.7	0.0	100.0	
	수회/ 일정 시간 경과	빈도	5	7	4	3	3	4	2	6	2	6	0	42	
		비율(%)	11.9	16.7	9.5	7.1	7.1	9.5	4.8	14.3	4.8	14.3	0.0	100.0	
	수십회	빈도	0	2	0	0	1	3	2	2	3	7	1	21	
		비율(%)	0.0	9.5	0.0	0.0	4.8	14.3	9.5	9.5	14.3	33.3	4.8	100.0	
합계		빈도	7	13	10	10	10	10	10	10	5	14	1	100	
		비율(%)	7.0	13.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4.0	1.0	100.0	
피고인 연령	20대	빈도	0	0	2	3	0	0	1	0	1	1	0	8	0.458
		비율(%)	0.0	0.0	25.0	37.5	0.0	0.0	12.5	0.0	12.5	12.5	0.0	100.0	
	30대	빈도	2	6	3	2	1	2	4	5	2	3	0	30	
		비율(%)	6.7	20.0	10.0	6.7	3.3	6.7	13.3	16.7	6.7	10.0	0.0	100.0	
	40대	빈도	3	3	3	5	3	5	4	3	2	5	1	37	
		비율(%)	8.1	8.1	8.1	13.5	8.1	13.5	10.8	8.1	5.4	13.5	2.7	100.0	
	50대	빈도	1	2	1	0	4	0	1	1	0	1	0	11	
		비율(%)	9.1	18.2	9.1	0.0	36.4	0.0	9.1	9.1	0.0	9.1	0.0	100.0	
	60대	빈도	0	1	0	0	2	2	0	1	0	4	0	10	
		비율(%)	0.0	10.0	0.0	0.0	20.0	20.0	0.0	10.0	0.0	40.0	0.0	100.0	
	70대 이상	빈도	1	1	1	0	0	1	0	0	0	0	0	4	
		비율(%)	25.0	25.0	25.0	0.0	0.0	25.0	0.0	0.0	0.0	0.0	0.0	100.0	
합계		빈도	7	13	10	10	10	10	10	10	5	14	1	100	
		비율(%)	7.0	13.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4.0	1.0	100.0	
반성 정도	깊이 반성	빈도	5	9	10	8	9	7	8	3	3	4	0	66	0.006**
		비율(%)	7.6	13.6	15.2	12.1	13.6	10.6	12.1	4.5	4.5	6.1	0.0	100.0	
	보통	빈도	0	2	0	0	0	0	0	3	0	1	0	6	
		비율(%)	0.0	33.3	0.0	0.0	0.0	0.0	0.0	50.0	0.0	16.7	0.0	100.0	
	개전의 정없음	빈도	0	0	0	1	0	1	1	4	2	3	1	13	
		비율(%)	0.0	0.0	0.0	7.7	0.0	7.7	7.7	30.8	15.4	23.1	7.7	100.0	
합계		빈도	5	11	10	9	9	8	9	10	5	8	1	85	
		비율(%)	5.9	12.9	11.8	10.6	10.6	9.4	10.6	11.8	5.9	9.4	1.2	100.0	

			형량											합계	χ^2
			집유	36.00	60.00	84.00	96.00	120.00	144.00	180.00	240.00	무기	사형		
피해 회복	합의	빈도	0	1	3	1	0	1	0	0	1	0	0	7	0.061
		비율()	0.0	14.3	42.9	14.3	0.0	14.3	0.0	0.0	14.3	0.0	0.0	100.0	
	일부 합의	빈도	0	0	0	1	1	0	0	0	0	0	0	2	
		비율(%)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100.0	
	미합의	빈도	0	0	1	4	4	5	8	6	3	5	1	37	
		비율(%)	0.0	0.0	2.7	10.8	10.8	13.5	21.6	16.2	8.1	13.5	2.7	100.0	
합계		빈도	0	1	4	6	5	6	8	6	4	5	1	46	
		비율(%)	0.0	2.2	8.7	13.0	10.9	13.0	17.4	13.0	8.7	10.9	2.2	100.0	
피해자 수	1명	빈도	7	12	9	10	10	10	10	9	3	6	1	87	0.001
		비율(%)	8.0	13.8	10.3	11.5	11.5	11.5	11.5	10.3	3.4	6.9	1.1	100.0	
	2명	빈도	0	1	1	0	0	0	0	1	2	4	0	9	
		비율(%)	0.0	11.1	11.1	0.0	0.0	0.0	0.0	11.1	22.2	44.4	0.0	100.0	
	3명 이상	빈도	0	0	0	0	0	0	0	0	0	4	0	4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합계		빈도	7	13	10	10	10	10	10	10	5	14	1	100	
		비율(%)	7.0	13.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4.0	1.0	100.0	
피해자 관계	가족	빈도	7	12	7	4	4	5	3	2	1	6	0	51	0.035
		비율(%)	13.7	23.5	13.7	7.8	7.8	9.8	5.9	3.9	2.0	11.8	0.0	100.0	
	친족	빈도	0	0	0	0	0	1	0	1	0	1	0	3	
		비율(%)	0.0	0.0	0.0	0.0	0.0	33.3	0.0	33.3	0.0	33.3	0.0	100.0	
	친구	빈도	0	0	0	4	0	0	0	1	2	0	0	7	
		비율(%)	0.0	0.0	0.0	57.1	0.0	0.0	0.0	14.3	28.6	0.0	0.0	100.0	
	애인	빈도	0	0	1	0	1	2	4	3	1	0	0	12	
		비율(%)	0.0	0.0	8.3	0.0	8.3	16.7	33.3	25.0	8.3	0.0	0.0	100.0	
	잘아는 사람	빈도	0	1	1	0	3	2	0	1	1	2	0	11	
		비율(%)	0.0	9.1	9.1	0.0	27.3	18.2	0.0	9.1	9.1	18.2	0.0	100.0	
	약간 아는 사람	빈도	0	0	0	0	0	0	0	0	0	1	0	1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직장 동료	빈도	0	0	0	1	1	0	1	0	0	0	0	3	
		비율(%)	0.0	0.0	0.0	33.3	33.3	0.0	33.3	0.0	0.0	0.0	0.0	100.0	
	업무 관계인	빈도	0	0	0	0	0	0	0	0	0	1	0	1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기타	빈도	0	0	1	1	1	0	2	2	0	3	1	11	
		비율(%)	0.0	0.0	9.1	9.1	9.1	0.0	18.2	18.2	0.0	27.3	9.1	100.0	
합계		빈도	7	13	10	10	10	10	10	10	5	14	1	100	
		비율(%)	7.0	13.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4.0	1.0	100.0	
피해자 처벌 의사	선처 탄원	빈도	3	6	4	4	1	1	0	1	1	0	0	21	0.039
		비율(%)	14.3	28.6	19.0	19.0	4.8	4.8	0.0	4.8	4.8	0.0	0.0	100.0	
	처벌 불원	빈도	1	2	1	0	0	1	0	0	0	0	0	5	
		비율(%)	20.0	40.0	20.0	0.0	0.0	20.0	0.0	0.0	0.0	0.0	0.0	100.0	
	강력 처벌	빈도	0	0	0	0	1	1	2	2	2	4	0	12	
		비율(%)	0.0	0.0	0.0	0.0	8.3	8.3	16.7	16.7	16.7	33.3	0.0	100.0	
합계		빈도	4	8	5	4	2	3	2	3	3	4	0	38	
		비율(%)	10.5	21.1	13.2	10.5	5.3	7.9	5.3	7.9	7.9	10.5	0.0	100.0	

			형량											합계	χ^2
			집유	36.00	60.00	84.00	96.00	120.00	144.00	180.00	240.00	무기	사형		
음주 관계	만취	빈도	0	0	0	2	2	0	1	1	0	0	0	6	0.149
		비율()	0.0	0.0	0.0	33.3	33.3	0.0	16.7	16.7	0.0	0.0	0.0	100.0	
	주취	빈도	0	1	5	4	3	5	4	3	2	8	0	35	
		비율(%)	0.0	2.9	14.3	11.4	8.6	14.3	11.4	8.6	5.7	22.9	0.0	100.0	
	비음주	빈도	7	11	5	3	5	5	5	6	3	6	1	57	
		비율(%)	12.3	19.3	8.8	5.3	8.8	8.8	8.8	10.5	5.3	10.5	1.8	100.0	
합계		빈도	7	12	10	9	10	10	10	10	5	14	1	98	
		비율(%)	7.1	12.2	10.2	9.2	10.2	10.2	10.2	10.2	5.1	14.3	1.0	100.0	
전과 관계	전과 없음	빈도	5	12	7	6	6	3	3	2	3	4	0	51	0.001
		비율(%)	9.8	23.5	13.7	11.8	11.8	5.9	5.9	3.9	5.9	7.8	0.0	100.0	
	이종 전과	빈도	0	0	0	1	0	3	1	2	2	2	0	11	
		비율(%)	0.0	0.0	0.0	9.1	0.0	27.3	9.1	18.2	18.2	18.2	0.0	100.0	
	동종 전과	빈도	0	1	0	0	0	0	0	0	0	4	1	6	
		비율(%)	0.0	16.7	0.0	0.0	0.0	0.0	0.0	0.0	0.0	66.7	16.7	100.0	
합계		빈도	5	13	7	7	6	6	4	4	5	10	1	68	
		비율(%)	7.4	19.1	10.3	10.3	8.8	8.8	5.9	5.9	7.4	14.7	1.5	100.0	
건강 상태	심신 미약	빈도	2	5	1	3	2	0	2	1	0	1	0	17	0.006
		비율(%)	11.8	29.4	5.9	17.6	11.8	0.0	11.8	5.9	0.0	5.9	0.0	100.0	
	지병	빈도	1	2	2	0	2	1	0	1	0	3	0	12	
		비율(%)	8.3	16.7	16.7	0.0	16.7	8.3	0.0	8.3	0.0	25.0	0.0	100.0	
	극도 심리 불안	빈도	4	4	1	1	0	0	0	0	1	1	0	12	
		비율(%)	33.3	33.3	8.3	8.3	0.0	0.0	0.0	0.0	8.3	8.3	0.0	100.0	
	정상	빈도	0	0	0	0	0	0	0	0	0	9	1	1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90.0	10.0	100.0	
합계		빈도	7	11	4	4	4	1	2	2	1	14	1	51	
		비율(%)	13.7	21.6	7.8	7.8	7.8	2.0	3.9	3.9	2.0	27.5	2.0	100.0	

○ 범행동기, 범행계획성, 피해자 유발 여부, 가해횟수, 반성 여부, 피해자 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처벌 의사, 전과 관계, 피고인 건강상태의 세분화된 양형인자는 양형을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분류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4. 법원별 양형분포

가. 범행 동기

구분 / 법원	가정불화				언행격분				금전관계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서울중앙		14(122.6)	1			2(120)						
서울동부		5(124.8)				2(150)						
서울남부		8(105)				1(180)						
서울북부		4(141)				1(144)						
서울서부		2(84)					1					
의정부	1	1(84)				2(84)	1					
인천		3(60)				2(240)				1(96)		
수원		6(62)	2			1(96)				1(96)		
춘천		2(48)	1			1(60)						
대전	2	1(36)										
청주		1(36)										
대구	1	3(104)			1							
부산	1	1(36)					1					
울산			1									
창원	1	1(36)										
합계	**6**	**52(98.1)**	**5**		**1**	**12(139)**	**3**			**2(96)**		

구분 / 법원	원한관계				정신질환				싸움				기타			
서울중앙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서울동부						1(180)										
서울남부			1							1(84)						
서울북부		1(144)								4(162)						
서울서부			1							1(240)						
의정부																
인천																
수원										1(84)						

구분 / 법원	원한관계				정신질환				싸움				기타			
춘천			1							1(96)					1	
대전						1(36)									1	
청주																1
대구																
부산										1(36)						
울산															1	
창원																
합계																
		1(144)	**3**			**2(108)**				**9(132)**					**3**	**1**

○ 범행동기에 따른 평균형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유의미한 빈도수를 갖는 가정불화로 인한 범행의 경우 평균형량이 98개월임에 반하여 언행 중 격분하여 범행한 경우 또는 싸움 중에 범행한 경우에는 139개월, 132개월의 평균형량을 보이고 있음

○ 법원별, 지역별로 범행동기를 기준으로 한 형량의 차이가 유의미한 빈도수를 보이는 경우 62개월에서 122개월 정도 나타남

나. 범행 방법

구분 / 법원	흉기사용				익사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서울중앙		12(142)	1					
서울동부		6(126.3)						
서울남부		10(145.2)						
서울북부		5(153.6)	1					
서울서부		1(84)	1					
의정부	1	2(84)	1					
인천		6(130)						
수원		5(88.8)	4					

구분 / 법원	흉기사용				익사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춘천		3(44)	2					
대전	1	1(36)		1				
청주						1(36)		
대구		3(104)						
부산	1	1(36)	2					
울산			1					
창원								
합계	**3**	**55(121.34)**	**13**	**1**		**1(36)**		

구분 / 법원	교살(질식)				총포류사용				독극물사용			
서울중앙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서울동부		5(86.4)										
서울남부		2(132)	1									
서울북부		4(90)										
서울서부		1(180)										
의정부		1(84)										
인천						1(84)						
수원		1(60)										
춘천		3(52)								1(60)		
대전		1(60)										
청주	1											
대구												
부산	1								1	1(36)		
울산												
창원												
합계	1	1(36)										
	3	**19(85.9)**	**1**			**1(84)**			**1**	**2(48)**		

○ 일반적인 범행방법으로 볼 수 있는 교살(질식사)의 경우보다 흉기가 사용된 경우 평균형량이 36개월(121개월-85개월) 정도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전과 유무

구분	전과없음				이종전과				동종전과			
법원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서울중앙		7(108)	1			2(150)						
서울동부		4(111)	1			2(120)						
서울남부		6(86)				3(188)						
서울북부		3(160)	1									
서울서부		1(84)				1(84)						
의정부	1	1(84)					1					
인천		5(108)				1(240)						
수원		4(63)	1								1	
춘천		4(48)									1	
대전	1	1(36)										1
청주		1(36)										
대구	2	3(104)								1(36)		
부산		1(36)									2	
울산							1					
창원	1	1(36)										
합계	**5**	**42(90.6)**	**4**			**9(158.7)**	**2**			**1(36)**	**4**	**1**

○ 이종전과가 있는 경우와 전혀 초범인 경우 평균형량의 차이는 68개월 정도임

라. 가해 횟수별

구분	1회/일순간				수회/일정시간경과				수십회			
법원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서울중앙		6(106)				9(137.3)	1			2(132)		
서울동부		4(102)				2(150)				2(150)	1	
서울남부		6(122)				4(111)				4(159)		
서울북부		3(140)				2(192)	1			1(144)		
서울서부		1(84)				1(84)					1	
의정부	1	2(84)				1(84)	1					
인천		3(68)				2(78)				2(240)		

구분 / 법원	1회/일순간				수회/일정시간경과				수십회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집행유예	실형	무기징역	사형
수원		6(74)				3(72)	1				3	
춘천		2(60)				1(36)	2			1(36)		
대전					2	1(36)						1
청주						1(36)						
대구	1	1(36)			1	2(138)				1(36)		
부산					1	1(36)					2	
울산			1									
창원					1	1(36)						
합계	**2**	**34(95.6)**	**1**		**5**	**31(108.3)**	**6**			**13(145.8)**	**7**	**1**

○ 가해횟수가 가중됨에 따라 평균형량은 95개월, 108개월, 145개월로 증가하고 있음

5. 상관분석

	형량	계획성 여부	고의	범행 동기	피해자 유발	범행 방법	가해 부위	가해 횟수	연령	반성	피해 회복	피해 자수	피해자 관계	처벌 의사	음주 관계	전과 관계	건강 상태
형량	1	0.450	0.117	0.202	0.384	0.226	0.005	0.424	0.020	0.467	0.311	0.489	-0.358	0.702	-0.097	0.574	0.536
		0.000	0.247	0.044	0.000	0.024	0.964	0.000	0.845	0.000	0.035	0.000	0.000	0.000	0.343	0.000	0.000
계획성 여부	0.450	1	0.105	0.100	0.258	0.231	-0.227	0.144	-0.088	0.417	0.235	0.284	-0.109	0.275	0.288	0.142	0.269
	0.000		0.297	0.321	0.009	0.021	0.024	0.154	0.384	0.000	0.115	0.004	0.281	0.095	0.004	0.249	0.057
고의	0.117	0.105	1	0.115	0.106	0.014	-0.169	-0.044	0.037	0.114	0.191	0.074	-0.125	0.101	-0.078	0.002	-0.089
	0.247	0.297		0.255	0.295	0.890	0.095	0.665	0.716	0.300	0.204	0.466	0.217	0.545	0.447	0.989	0.536
범행 동기	0.202	0.100	0.115	1	0.012	0.087	-0.111	-0.093	0.094	-0.021	0.145	0.031	-0.143	0.113	0.001	0.014	0.406
	0.044	0.321	0.255		0.909	0.388	0.275	0.359	0.352	0.851	0.337	0.762	0.155	0.498	0.990	0.907	0.003
피해자 유발	0.384	0.258	0.106	0.012	1	0.080	0.097	0.172	-0.015	0.321	0.216	0.172	-0.192	0.491	0.058	0.298	0.005
	0.000	0.009	0.295	0.909		0.427	0.341	0.087	0.883	0.003	0.150	0.087	0.056	0.002	0.571	0.014	0.974
범행 방법	0.226	0.231	0.014	0.087	0.080	1	-0.440	0.214	0.025	0.150	0.047	0.036	-0.185	0.092	-0.080	0.092	0.262
	0.024	0.021	0.890	0.388	0.427		0.000	0.032	0.804	0.172	0.757	0.722	0.065	0.582	0.435	0.456	0.064
가해 부위	0.005	-0.227	-0.169	-0.111	0.097	-0.440	1	0.171	0.085	0.063	0.003	0.081	0.066	0.037	0.072	0.109	-0.051
	0.964	0.024	0.095	0.275	0.341	0.000		0.091	0.404	0.570	0.986	0.423	0.518	0.823	0.481	0.382	0.723
가해 횟수	0.424	0.144	-0.044	-0.093	0.172	0.214	0.171	1	0.050	0.329	0.058	0.249	-0.042	0.208	0.087	0.313	0.281
	0.000	0.154	0.665	0.359	0.087	0.032	0.091		0.623	0.002	0.700	0.012	0.678	0.210	0.396	0.009	0.046
연령	0.020	-0.088	0.037	0.094	-0.015	0.025	0.085	0.050	1	0.005	-0.012	-0.026	0.018	0.096	0.014	-0.061	0.032
	0.845	0.384	0.716	0.352	0.883	0.804	0.404	0.623		0.964	0.938	0.798	0.862	0.565	0.890	0.621	0.821
반성	0.467	0.417	0.114	-0.021	0.321	0.150	0.063	0.329	0.005	1	0.257	0.040	-0.333	0.564	-0.030	0.378	0.101
	0.000	0.000	0.300	0.851	0.003	0.172	0.570	0.002	0.964		0.115	0.719	0.002	0.001	0.785	0.003	0.547
피해 회복	0.311	0.235	0.191	0.145	0.216	0.047	0.003	0.058	-0.012	0.257	1	-0.064	-0.063	0.688	0.012	0.334	0.350
	0.035	0.115	0.204	0.337	0.150	0.757	0.986	0.700	0.938	0.115		0.671	0.680	0.019	0.936	0.066	0.168
피해자 수	0.489	0.284	0.074	0.031	0.172	0.036	0.081	0.249	-0.026	0.040	-0.064	1	-0.005	0.172	0.076	-0.003	0.259
	0.000	0.004	0.466	0.762	0.087	0.722	0.423	0.012	0.798	0.719	0.671		0.960	0.301	0.457	0.980	0.066
피해자 관계	-0.358	-0.109	-0.125	-0.143	-0.192	-0.185	0.066	-0.042	0.018	-0.333	-0.063	-0.005	1	-0.464	0.241	-0.405	-0.088
	0.000	0.281	0.217	0.155	0.056	0.065	0.518	0.678	0.862	0.002	0.680	0.960		0.003	0.017	0.001	0.537
처벌 의사	0.702	0.275	0.101	0.113	0.491	0.092	0.037	0.208	0.096	0.564	0.688	0.172	-0.464	1	-0.169	0.479	0.295
	0.000	0.095	0.545	0.498	0.002	0.582	0.823	0.210	0.565	0.001	0.019	0.301	0.003		0.324	0.018	0.207
음주 관계	-0.097	0.288	-0.078	0.001	0.058	-0.080	0.072	0.087	0.014	-0.030	0.012	0.076	0.241	-0.169	1	-0.220	0.153
	0.343	0.004	0.447	0.990	0.571	0.435	0.481	0.396	0.890	0.785	0.936	0.457	0.017	0.324		0.075	0.293
전과 관계	0.574	0.142	0.002	0.014	0.298	0.092	0.109	0.313	-0.061	0.378	0.334	-0.003	-0.405	0.479	-0.220	1	0.211
	0.000	0.249	0.989	0.907	0.014	0.456	0.382	0.009	0.621	0.003	0.066	0.980	0.001	0.018	0.075		0.198
건강 상태	0.536	0.269	-0.089	0.406	0.005	0.262	-0.051	0.281	0.032	0.101	0.350	0.259	-0.088	0.295	0.153	0.211	1
	0.000	0.057	0.536	0.003	0.974	0.064	0.723	0.046	0.821	0.547	0.168	0.066	0.537	0.207	0.293	0.198	

○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는 범행의 계획성 여부, 범행 동기, 피해자 유발 유무, 가해횟수, 반성,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 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전과, 피고인의 건강상태였음

○ 고의 여부, 가해부위, 피고인의 연령, 음주 관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 피고인 건강상태 > 전과 > 피해자의 수 > 반성 > 범행의 계획성 > 가해횟수 > 피해자 유발 유무 >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회복'의 순임

○ 가중적 양형인자

- 피해자 측의 처벌 희망, 폭력전과, 2인 이상의 피해자 수, 계획적 범행, 평균 이상의 가해횟수 등

○ 감경적 양형인자

-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발 행위가 있었던 경우, 피해회복 등
- 피해자와의 관계는 가족, 친구, 애인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형량이 낮아지고, 모르는 사람인 경우 형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실형과 집행유예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는 표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6. 회귀분석

○ 주요 양형인자를 대상으로 예상 형량을 분석하여 양형예측표를 작성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빈도수가 적고 결측치가 많아 유의미한 회귀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Ⅳ. 양형위원회 관련 폐쇄커뮤니티 개설

1. 커뮤니티 개설의 필요성

○ 양형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중 법원 내부의 코트넷으로 정보 전달 또는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부 위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공지사항이나 자료를 전달받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확보할 필요

2. 커뮤니티 구성원

○ 양형위원회 위원(13명), 전문위원(15명), 운영지원단 직원으로 하되, 향후 양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확대할 예정

○ 커뮤니티 접속은 회원인증(아이디, 비밀번호) 과정을 통하여 접속함

○ 각종 게시물은 커뮤니티 구성원에게만 공개하되,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 게시대상을 전체,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으로 구별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함

3. 커뮤니티 주소

○ 대법원 코트넷 내부의 폐쇄 커뮤니티임

○ http://yanghyeong.scourt.go.kr

4. 커뮤니티 구성

○ 공지사항 등록, 공지사항 수정, 공지 리스트, 공지사항 조회

○ 건의 등록, 건의 리스트, 건의함 상세보기

○ 자료실 리스트, 자료실 상세보기

○ 자유게시판

○ 사법망 연계 관계

- 종합법률정보 및 양형정보시스템 정보를 제공할 예정

5. 추진일정

○ 2007. 8. 초 개설 착수

○ 2007. 10. 중순 개설 예상

V. 전문위원 연구업무 지원

1. 법원도서관 이용

○ 주간, 야간 열람·복사 가능, 다만, 야간에는 단장 신분증 이용 필요

○ 서적 대출은 단장에게 요청

2. 자료실 구축 및 연구자료의 수집 · 제공

○ 양형 관련 자료실을 구축할 예정

○ 국내외 자료를 구입·수집하여 법원도서관 자료 편입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

3. 자료집 발간

○ 전문위원 제1차 회의에 양형 관련 기존 문헌을 수집하여 자료집을 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운영지원단에서는 국내 문헌을 수집하여 1차 전문위원 자료집을 발간한 후, 외국 문헌을 수집하여 2차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

4. 연구용역 또는 연구보조인력의 활용

○ 전문위원 자체만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연구주제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연구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소요예산 발생 시 지원단 검토 후 행정처 협조,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